

February 21, 2014

중국 해관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수정에 따른 한국기업의 참고사항

중국 관세청은 2013년 12월 25일 <해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결정 방법>(관세청령 [2013]제213호, 이하 “신규 213호령”) 및 <해관 내수 보세화물 과세가격 결정 방법>(관세청령 [2013]제211호, 이하 “신규 211호령”)이라 하며, 신규 213호령과 총칭하여 “신규 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신규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로써 기존까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결정 규정의 역할을 했던 2006년 3월 28일자 <해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결정 방법>(관세청령 [2006]제148호, 이하 “기존 148호령”)은 폐지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신규 규정 중 중국과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한국기업이 참고할 만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일반무역 수출입화물과 내수 보세화물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148호령에서는 일반무역 수출입화물과 내수 보세화물(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가공무역 내수 보세화물, 보세구·보세물류원구 등 해관특수감독관리 지역을 경유하여 내수 판매한 보세화물 등 포함)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하여 모두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일반무역 수출입화물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신규 213호령에서 규정하고, 내수 보세화물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신규 211호령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른 무역형태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이 보다 체계화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211호령은 내수 보세화물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213호령은 일반무역 수입화물 과세가격 결정 방법, 특수 수입화물(역외 가공/수리 후 반송, 임대 목적 수입, 임시 수입 등) 과세가격 결정 방법, 수출화물 과세가격 결정 방법 및 과세가격 결정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2. 일반무역 수출입화물과 관련하여 이전가격 문제를 보다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일반무역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관련하여 신규 213호령은 기존 148호령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여 변경된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일부 변경된 사항 중 한국기업이 유념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이번 개정 과정에서 새로 반영된 “거래환경심사를 통한 이전가격심사제도”입니다. 신규 213호령 제18조에 따르면 해관이 화물의 거래환경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된다고 판단할 경우 특수관계인간에 합의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고

이를 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모회사(주주)가 중국 자회사에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해관에 화물의 거래 환경에 관한 소명 자료를 제공하여 관계사간 합의된 가격이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내수 보세화물 과세가격 결정 기준이 수정되고, 보세물류화물 비용공제 항목이 일부 추가되었습니다.

내수 보세화물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 148호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해당 화물(또는 원재료) 또는 유사 화물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신규 211호령에 따르면 대부분 내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신규 211호령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규 211호령 제11조에 따르면 보세물류화물(즉, 가공을 거치지 않은 보세 유통화물)의 과세가격은 보세물류원구 등 해관특수감독관리 지역으로부터 보세물류화물을 반출하여 내수 판매할 경우 내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경우 내수 판매가격에 반영된 원가 항목 중 단독 식별 및 소명 가능한 일부 비용(구체적으로 해관특수감독관리 지역 내에서 발생한 보험료, 보관료, 운임 및 관련 비용을 의미함)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공제 항목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세물류원구 등 해관특수감독관리 지역을 경유하여 보세물류화물을 내수 판매하는 회사의 경우 과세가격이 기존보다 감액되어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원 변호사 [북경사무소]	TEL. +86 10 8447 5343	E-Mail. ywchoi@shinkim.com
● 원중재 변호사 [상해사무소]	TEL. +86 21 6235 0411	E-Mail. jjwon@shinkim.com
● 정천주 중국변호사 [서울사무소]	TEL. +82 2 316 4201	E-Mail. tszheng@shinkim.com
● 임준희 관세사	TEL. +82 2 316 4487	E-Mail. jhlim@shinkim.com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